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9/ 2 통권 1482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조세전문가· 재경실무자· 총무담당자· 모든 관리자용 **이름**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생각은 세계화, 실천은 현지화하라

2020년 지방세 관계법을 개정안 문답자료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사망상속전에 분할증여·지분양도 또는 기업승계를 통한 인생조세전략 10가지

CFO·외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임직원 등에게 발생된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세무처리
- 국세청, 세무포인트를 사용하여 활인받는 전용 온라인소평을 개통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20.2분기)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사업 부진으로 음료점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간이 음식점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적용됨 (p.12)

< 자녀의 결혼주택 취득시 부족자금을 빌려줄까, 그냥 줄까의 장단점 비교 >

상황 : 10억 부동산 취득 = 자기소득자금출처 2억원 + 전세금 3억원 + 차입금 또는 증여금 5억원

개념비교	부모의 자금대여, 정상이자 받음	부모의 전액증여 종결
방법	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을 가족간 적법대여	부족액을 현금, 예금 증여함
증여문제	가족간 금전무상대출은 이자금액 증여임	문제없음(증여세 신고)
정상거래	5억원 × 연 이율 4.6%(최저율) = 연 23,000,000	전액증여
10년 단위 세금 (증여합산기간)	원천세 : 23백만원 × 15.4% × 10년 = 35,420,000원(예납) 중소세(총소득 1억 내외 : 35%로 가정) 23백만원 × 35% × 1.1 × 10년 = 88,550,000(최종세금 합계)	증여세 : 5억-5천만원 (10년 단위 공제) = 4.5억 → 1억 × 10% + 3.5억 × 20% = 8천만원
이자와 원금 상환	① 자녀가 이자를 10년간 2.3억원 지급 ② 자녀가 원금 5억원도 반환해야 함	증여로 종결되므로 상환의무 없음
최종세금 등	소득세 약 8천8백만원이고, 반환문제 남음	증여세 8천만원으로 반환없이 종결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82 호 / 주간 36호

2020. 9. 2.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자녀의 결혼주택 취득시 부족자금을 빌려줄까 그냥 줄까의 장단점 비교	표지
긴급시사해설	사망상속전에 분할증여·지분양도 또는 가업승계를 통한 인생조세전략 10가지	2
CEO에세이	생각은 세계화, 실천은 현지화하라	3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기존자산철거후 다른 건축물 신축하는 경우 신규자산 취득으로 처리함 - 종이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서 보과하는 경우는 적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함 - 동일 거래처와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총액으로 매출과 매입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함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임직원 등에게 발생한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세무처리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관련 주요 변화 - 본회의 통과한 부동산 세법안	9 10
직장인 Survival	성공은 행동이 만드는 것이다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서면상속증여-217, 2020.01.20) -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서울세제과-3210, 2020.02.25)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확정... 9월 국회 제출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사업 부진으로 음료점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간이 음식점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적용됨	12
세무정보	-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15
회계정보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20.2분기)	22 29
경영정보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8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사망상속전에 분할증여 · 지분양도 또는 가업승계를 통한 인생조세전략 10가지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10년 단위로 구분 선증여실행 : 10년 단위 공제(부부간 6억, 성년자녀 5천 등 적용)와 과세금액 1억까지의 10% 낮은세율 계속 활용(10년내 일부 분산증여가 합산되어도, 선납세액 공제되므로 합산관련 불이익은 없음)
2. 사전증여 적용세율과 사후상속적용세율을 비교하여 증여합 : 증여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한계세율 20%
상속재산 20억원이면 상속공제 약 15억원 차감 후 5억원까지는 한계세율 20%로 비슷
3. 사전증여세(증여세 일찍 냄)가 상속세(상속세는 사망시)보다 일찍 내지만, 해당 재산의 시가(기준시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가액은 지속적으로 높아짐을 감안
4. 수익 나는 자산 먼저 증여하여 자녀의 이자 등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자금원천확보
5. 기준시가, 공시지가 낮은 것이나 향후 상승 예상자산을 먼저 증여
6. 부담부증여 활용하여, 세금을 2가지인 증여세와 양도소득의 낮은세율구간 모두 적용(양도차익 적은 자산, 자산가액 큰 경우)
7. 직계자녀가 많고 손주도 많을 수록 전가족 분할증여 유리(모두 공제 적용되고 각자 낮은세율 적용)
8. 기업운영주식(지분)은 일부 선증여한 후, 기업내 잉여금의 일찍 배당으로 자금 · 소득 원천확보
9. 중소기업 등 법인소속 재산은 주식가치 평가하여 가업상속공제(200억, 300억, 500억원 적용)되므로 사전증여 불필요
10. 중산층이나 총재산이 20억원 이하이면 상속공제 15억원 정도 적용되므로, 사전증여할 필요까지는 없음.

생각은 세계화, 실천은 현지화하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피터 드러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사는 "글로벌화"와 "주권국가"간 상호작용의 역사다. 새뮤얼 헌팅턴 등의 "문명충돌론"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리라. 국제간의 교류에 속도가 붙으면서 문명과 문명간에 충돌과 절충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국제 사회는 "유니-멀티(Uni-multi)" 상황, 즉 "일극-다극"구조가 된다. 현대와 미래의 세계 질서와 사고방식을 성찰한 석학들의 진단이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간과 시간을 순식간에 극복한다. 인터넷의 세계를 확보하다 보면 공간의 개념조차 없어진다. 의례 국경도 초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인간들의 취향이나 관습이 결코 하나라는 뜻이 아니다.

"Think globally, but do locally."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사고는 세계적으로, 실행은 그 지역에 맞게"라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생존하는 하나의 지혜다. 항상 생각은 세계적인 흐름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는 한 국가, 한 지역만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말 그대로 지구촌이다. 특히 세계를 무대로 한 비즈니스는 세계를 한 눈에 들여다보는 안목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야 한다.

가끔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면서 현지인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보도를 들을 때가 있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 쪽의 문화를 무시한 채 우리 식 사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쪽 문화에 적응하면서 사업을 벌여야 한다. 그 나라의 문화에 파묻혀서 그 속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Do locally."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거대 회사들은 패션을 창조해 소비자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들이 패션을 예측하고 창조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집중적인 홍보를 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게 만드는 전략이다. 그들은 자기들 제품에 맞게 소비자를 교육시켜 물건을 판다. 그런 전략을 전개하려면 엄청난 자금과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소비

자를 교육시키며 따라오도록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재빨리 만들어 파는 전략이 지혜다. 시장은 전 세계다.

그러니 "Think globally."는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려면 "Do locally."해야 한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혹은 계층마다 소비자의 선호가 다르다. 각각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전략이다. 이 경우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문제, 통일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제품을 지역 특수성에만 맞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일테면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프로젝트가 30%되도록 유지한다. 나머지 70%는 지역 특수성에 맞게 공급한다. 말하자면 30%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지역 특수성에 맞는 70%의 프로젝트다.

세계의 흐름을 바꿀 힘이 없는 한 세계의 흐름을 타면서 그 지역화에도 성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항상 파악해 두었다가 소비자의 입맛이 변하면 그에 재빨리 응하기도 해야 한다. 변신은 중요하다. 우리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물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은 물결을 따른다.

사고의 세계화, 실행의 지역화 그리고 변신을 위한 유연성. 이것이 바로 경영 전략이다.



기존자산철거후 다른 건축물 신축하는 경우 신규자산 취득으로 처리함

Q 기존 건물(사무실)을 일부 철거하고 그 사무실 있던곳을 공장화 할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기존 건물은 유형자산으로 잡혀있는데 사무동을 철거하고 공장화(라인설치)를 하려고합니다. 이 때 건물을 철거할때 드는 비용과 공장화 하는 비용을 한꺼번에 기존 자산에 자본적지출로 처리할지? 아니면 기존 자산을 폐기하고 새롭게 자산을 취득할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A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자산 폐기후 신규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이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서 보관하는 경우는 적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Q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를 도입하여 온라인 지출관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외 개인카드를 통한 지출 및 청구를 하는 경우,

1. 적격증빙을 스캔본으로 데이터화 하여 보관 시 해당 적격증빙에 대하여 원본 보관을 이 중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2. 법인/개인카드 온라인 결제로 카드매출전표가 온라인상에서만 출력이 가능하여 원본 매출전표가 없는 경우, 온라인카드매출전표의 pdf파일 보관이 적격증빙인정여부?
3. 회사 인원이 많아 원본(개인카드 매출전표 또는 간이영수증) 수취를 하지 않고 스캔본 또는 개인카드사 전자전표로만 증빙을 보관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1. 적격증빙을 온라인으로 받지 않고 종이로 받은 경우 해당 종이를 스캔받은 경우의 스캔본은 적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결제로 인해 온라인증빙으로 받은 경우는 해당 온라인 증빙을 출력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3. 원본을 온라인을 통해 받아 보관하는 경우는 적법증빙으로 인정되나, 종이 등으로 받은 후 스캔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애초부터 종이 가 아닌 온라인자료로 받아 pdf파일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적법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종이로 받은 후 스캔받아 pdf로 저장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함

Q 당사는 유료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관련입니다.

1. 당사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모두 수납
2. 노선버스는 해당기간(3.19~)에 지출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로 환불 요청
3. 한국도로공사는 환불 후 당사로 청구요청(청구분은 3.18~4.18 사용분)
4. 당사는 해당 노선버스에 월별 세금계산서 기발행(3월말, 4월말일자) 질의) 당사가 한국도로공사에 환불통행료를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노선버스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해야 하는 것인지?

A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사도 증감사유가 발생해 환불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거래처와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총액으로 매출과 매입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Q 설비 공급처 "A"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종료된 설비를 매각하고 새로운 설비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각은 공급처 "A"에게 하고 취득도 "A"에서 합니다.
매각금액은 1백만원이고, 설비 취득금액은 3천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당사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 1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3천만원 이렇게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A"에서는 취득금액에서 매각금액을 상계하고 29백만원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행하여도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A 동일거래처와 기존자산 매각후 신규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각각 1백만원과 3백만원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대금의 경우 상계하고 지급하여도 되나, 세금계산서는 총액으로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임직원 등에게 발생한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세무처리

상담실 백종훈 차장

세무조사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처분 등이 발생하여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사후 세무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귀속이 명확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은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처분함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이러한 소득처분은 유보,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구분하는데, 익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나 국세청의 결정·경정에 의해 특정 임원이나 직원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임원이나 직원에게 근로소득세의 추가납부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여처분을 받은 임원이나 종업원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대신 납부해 주고 손비로 처리하였다면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다시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면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는다면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서면2팀-825, 2007.05.02

【질의】

(사실관계)

- 질의1) 12월말 결산법인 갑법인은 2005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자
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함. 을은 2006년 3월에 퇴사하였으며 가지급금은 퇴사시 전액 회수함. 갑
법인은 2006년 4월 원천세 신고시 전대표자 을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방하고 "세금과공
과"로 계상함. 2006년도분 법인세 세무조정시 위 "세금과공과"로 계상한 원천징수분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
분은.

- 질의2) 위 질의1)과 무관하며, 법인세 신고시 병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자자를 계상하여 "익금산
입, 상여처분"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대납하였고, 대납액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한 후, 다시 추가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납하는 경우 또다시 상여처분을 하
는 것인지 여부(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를 계속 대납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상여처분을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요지)

- 대표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납분에 대한 소득처분

【회신】

귀 질의1)과 같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
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귀 질의2)와 같이 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세 대납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반 영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또는 추계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인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소득세를 대납하면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않는 것으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소멸로 손비처리시 손금불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된다.

이는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
득세 대납액에 한하며, 그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히 귀속되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대납액(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관련 주요 변화

	현재	6/25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7/22 세법개정안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과세(소액주주 비과세) - 대주주 : 종목별 10억원 이상 보유(21.4부터 3억원 이상) -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초과 25%, 1년 미만 보유 30% - 공제금액 2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 과세 -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초과 25% - 기본공제 2,000만원 - 결손금 3년간 이월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 과세 -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초과 25% - 기본공제 5,000만원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공제) - 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증권거래세 (농특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 0.25% - 코스닥 0.25% - 장외주식 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0.02%p 인하 - 2023년 0.08%p 추가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0.02%p 인하 - 2023년 0.08%p 추가 인하



금융세제 개편안 펀드 관련 주요 내용

구분	국내주식투자	공모펀드투자		사모펀드투자
		국내주식	해외주식	
현행과세	대주주 양도세 부과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주주 양도세 부과
2023년 이후	양도소득세		기타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000만원		250만원	



본회의 통과한 부동산 세법안

법안명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 세율 0.6~3.2% → 1.2~6.0%
소득세법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등 양도세 증과세율 인상, 3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최대 72%
법인세법	법인 보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10% → 20%
지방세법	2주택자 취득세율 1~3% → 8% 3주택자 이상 1~4% → 최대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감면혜택 현행 제도와의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감면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연령·혼인無)	확대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同
주택 면적	전용 60㎡ 이하	면적제한 없음	확대
감면율	50%	1.5억원 이하 100%, 그외 50%	확대
소득 기준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확대
감면 기한	'19. 1. 1. ~'20. 12. 31. / '20. 1. 1.~'21. 12. 31	20. 7. 10(정책 발표시점) ~ '21. 12. 31.	-



성공은 행동이 만드는 것이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므로 삶에 있어 하나만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행동'없이 불가능 합니다. '성공'이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운이 좋아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보통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는 '행동이 꼭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 그 사업을 했으면 대박 이었는데~"와 같이 생각과 상상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이란 행동이 만드는 결과물입니다.

힐튼호텔 창업자 콘라드 힐튼(Conrad Hilton)도 "나는 예전에 경비로 일하곤 했지요. 그런데 내가 만약 글을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경비로 있었을 거예요. 즉,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맞춰나간다면 그 상태로 머무를 테지만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실천하면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고,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 실행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바램을 꿈꿀뿐이지만, 성공한 사람은 목표가 있는 행동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실행합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안되는 이유를 나열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지만, 실천가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바램'일 뿐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고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착실하게 행동을 취할때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목표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최신 판례 예규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서면상속증여-2757, 2020.02.28

질 의

- OO협회는 설립목적인 회원사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사업의 준비를 담당하면서 회원사에게 특수목적회비를 수령하고 있음

질의내용

-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사업 부진으로 음료점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간이 음식점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적용됨

커피숍을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6④(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소득-733, 2019.12.31

질 의

- 질의인은 2018.10월 최초로 커피숍으로 사업자

등록을 함

- 커피숍 사업의 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2019.1월 같은 장소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함

*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름(조특령§ 5⑥)

질의

- 위의 사실관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조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숍)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고 해당 장소에서 기타 간이 음식점업(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증가세를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서울세제과-3210, 2020.02.25

■ 질 의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2019년 5월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타 회사에 임대)을 취득하여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 본점을 서울(임대용 부동산과 별도의 부동산)로 이전하고 2020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기존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

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1809, 2020.03.03

■ 질 의

- 파생상품 거래는 통상 선입선출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질의인은 '지정청산' 방식(매입순서와 관계없이 특정 미결제잔고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질의내용

- '지정청산' 방식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확정... 9월 국회 제출

정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 개정사항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0 세법개정안에는 주식투자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춰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렸다.

작년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7·10 대책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내용도 담았다.

20년만에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을 권련형 전자담배와의 형평에 맞춰 인상한다

기업 세제지원 정부원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 원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0 세법개정안에는 코로나19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안을 담았다.

시설투자 공제 등 기존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한데 모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대폭 늘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도록 했다.

국내소비 촉진 유도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한시적 상향과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도 5년 더 늘어났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7~18년 포항 지진의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기준 등을 담은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청, 해외로 거액 빼돌린 자산가 등 43명 세무조사 전격 착수

국세청은 27일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자 43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취임 후 처음 발표하는 역외탈세 사례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지만,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총 43명으로 해외자산 은닉으로 적발된 인원들은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해외 비밀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쇼핑하듯 해외 국적을 취득해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도 포착됐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관계사와 합법적인 거래인 것처럼 꾸며 정당한 세금 없이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각종 신고·수집자료, 유관기관 공조 등 국내 자료 외에도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정보 등을 통해 수집하는 해외 정보까지 총 동원해 역외탈세 혐의자는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살필 계획이다.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 국세청, 2020. 8

-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우대혜택 추가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8.26.(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로,
 - 이를 통해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마련하여,
 - 소액채납자에 대한 채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새로운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100p⇨1p)하였습니다.(4.9.부터)

-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혜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새로운 혜택을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 그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로 '20.8.26.(수)부터 성실한 세금납부를 통해 국민누구나 부여받는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혜택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통한 혜택 추가 내용〉

기존 혜택	추가 혜택
▶ 납세담보 제공 면제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물 ▶ 소액채납자 채납처분유예 ▶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수강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 세금포인트 제도란? 》

1 (제도개요) 국세청은 '04년 4월부터(법인은 '14년 3월)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원 당 1p)를 부여

2 (기존혜택) 납세유예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혜택 부여(담보면제금액 =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한도 5억원)

대 상	부여세목	부여시점	부여점수	부여현황('19년말)	
				대상	포인트
개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등	'00.1.1. 이후 신고·자진납부세액	10만원 당 1p (고지납부 0.3p)	3,309	5,900
법인 (중소기업 *만 해당)	▶ 법인세 등	'12.1.1. 이후 신고·자진납부세액	10만원 당 1p (고지납부 제외)	62	558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만 해당

- 아울러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누구라도 쉽고 편리하게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 특히 세금포인트와 관련된 화면*을 하나로 모아서 보다 찾기 쉽도록 구성하고, 메뉴 구성도 단순화하여 접속경로를 단축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중점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 세부메뉴 : ① 세금포인트 조회, ② 세금포인트 혜택, ③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새로운 혜택 1 :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개통

쇼핑몰 개요

- 국세청은 '20.8.26.(수)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하였습니다.
 - 세금포인트몰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입니다.
 - 이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용대상 : 개인납세자 우선개통('20.8.26) ⇨ 법인납세자('20.9월 중 개통)
-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력('20.4.9. MOU 체결)을 통해 세금포인트몰이 구축되었으며,
 -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쇼핑몰 특징

- 이번에 개통된 세금포인트몰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금포인트 사용을 목적으로 개설된 전용 온라인쇼핑몰입니다.

- 성실한 세금납부로 세금포인트를 적립하였으나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세금포인트 사용을 목적으로 개설된 전용 온라인쇼핑몰입니다.

② 온라인, 모바일로 세금포인트를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대상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입니다.

- 이용대상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이며, '20년 9월 중 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④ 보유한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부여합니다.

- 세금포인트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구매금액의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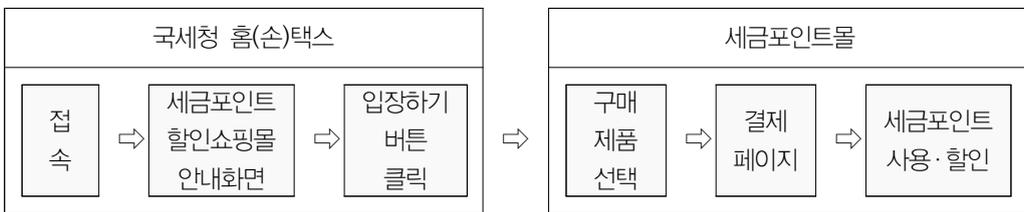
- 세금포인트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협업으로 구축·운영되며, 4만여 개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쇼핑몰 이용방법

- 세금포인트몰은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확인 후 세금포인트몰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세금포인트몰 이용방법 개요 》

- 1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만 이용 가능한 쇼핑몰입니다.
- 2 그러므로 세금포인트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국세청 홈(손)택스 화면을 거쳐야 합니다.
- 3 홈(손)택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화면에서 본인의 세금포인트 현황을 확인하고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입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 4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 5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 제품을 선택 후 결제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혜택 2 : 소액채납자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 한정)

혜택내용

-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1,000만원 이하소액채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유예신청 대상금액은 적립 세금포인트 × 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최대 100포인트를 한도로 합니다.

이용방법

- 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 (경로) 홈택스·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의 '소액채납자 체납처분유예' 항목에서 체납처분유예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로운 혜택 3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혜택내용

-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는 세금포인트(3p)를 사용하여 「납세자세법교실」에 우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납세자세법교실」을 우선 수강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 (경로) 홈택스·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의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항목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선 수강권을 받고,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항목에 위치한 교육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공무원 교육원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 내 「납세자세법교실」 수강신청화면에서 우선수강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새로운 혜택 4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혜택내용

-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는 세금포인트(5p)를 사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동반자 포함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 (경로) 홈택스·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의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항목에서 위치보기를 이용하여 비즈니스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 직접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 뒤 안내데스크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납세담보 제공면제 혜택은 계속 제공됩니다.

- 세금포인트를 활용하여 새롭게 제공되는 혜택 이외에도 납세유예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하는 기존 혜택은 계속 제공됩니다.

혜택내용

-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유예 신청을 검토할 때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나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 납세자는 적립된 세금포인트 × 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연간 5억 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사용가능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후

※ (경로) 홈택스·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의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담보면제' 항목에서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선내용 : 올해 4월부터 1p를 보유한 법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세금포인트의 사용기준이 개인과 법인이 달라
 - 유예신청세액이 개인의 경우 10만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 법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보유포인트 100p 기준)인 경우에만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 담보제공 부담 완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유예신청세액이 10만 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이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4. 9. 부터)

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

사용기준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종전	개선*
보유포인트	1P 이상	100P 이상	1P 이상

* '20.4.9.이후 사용분부터

3.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우대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혜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 금융감독원, 2020. 8

◆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15~2017년 감리 지적사례 34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지적사례 DB를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포탈(acct.fss.or.kr)의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함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 종전에는 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하였으나, 2019년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DB화*1하여 상세히 공개*2
 - *1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화
FSS지적사례발표기관/2008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 *2 사례별로 ①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②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③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④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⑤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2.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 2019.12월에 최근 2년간(2018~2019년) 감리지적사례 29건을 발표한 데 이어서 금번에는 추가로 3개년(2015~2017년) 지적사례 34건을 공개
 - 주요 지적내용은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식 미기재 3건, 기타 7건임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 ①진행 중인 공사에 소요되는 총예정원가가 변동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진행률(= 누적발생원가 / 총예정원가) 및 매출(= 공사수익 × 공사진행률) 왜곡, ②실제 제조·가공 및 이동 사실이 없는 중고제품을 관계회사에 인도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한 뒤 매출로 인식
-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①전환우선주에 내재된 전환권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면서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부채를 과소계상, ②해외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이익을 과소계상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
-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 손상이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지 않고 경과기간별 대손율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유무형자산 등 관련) 투자자산(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 손상징후가 명확했음에도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계상

3. 회계포탈 검색 기능 개선

- 감리지적사례 DB를 보다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메뉴 및 검색 기능을 개선
 - 정보이용자가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등 관심사항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①게시물 항목과 ②검색창을 개선
 - 기업이 감리지적사례를 쉽게 찾아 감독당국의 판단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중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4. 향후계획

- 감리지적사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편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발표하여 감리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

* (2021년 1분기) 2020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
(2021년 3분기) 2011 ~ 2014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

붙임 - 2015~2017년 감리지적사례 목록 및 예시

I 목 록

- ①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 관련(12건)
 1. FSS/2008-01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2. FSS/2008-02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3. FSS/2008-03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4. FSS/2008-04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5. FSS/2008-05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6. FSS/2008-06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7. FSS/2008-07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8. FSS/2008-08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계상
 9. FSS/2008-09 공사수익 과대계상
 10. FSS/2008-10 수익 기간귀속 오류
 11. FSS/2008-11 공사수익 오류
 12. FSS/2008-12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 ② 재고자산 관련(1건)
 1. FSS/2008-13 재고자산 허위계상
- ③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6건)
 1. FSS/2008-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2. FSS/2008-15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3. 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미인식
 4. FSS/2008-17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5. FSS/2008-18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6. 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 ④ 유무형자산 등 관련(3건)
 1. FSS/2008-20 유형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2. FSS/2008-21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3. FSS/2008-22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 ⑤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3건)
 1. FSS/2008-23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FSS/2008-24 소송 관련 증당부채 과소계상
3. FSS/2008-25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⑥ 기타자산, 부채, 자본 관련(2건)

1.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2. FSS/2008-27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⑦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관련(3건)

1. FSS/2008-28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2. FSS/2008-29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주석 미기재
3. 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기재 오류

⑧ 연결재무제표 관련(2건)

1. FSS/2008-31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2. FSS/2008-32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⑨ 기타 지적사항(2건)

1. FSS/2008-33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2. FSS/2008-34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II 예 시

감리지적사례 FSS/2008-02 :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총여정원가 과소계상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7.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항공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13년 회사는 항공 관련 부품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주처는 당초 일부 부품품만 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주요 부품 제조와 최종 조립은 직접 수행하려 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납기 연장 등 2차례 계약을 변경하고 회사 조달 범위를 확대하였다. 회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총예정원가에서 일부 예정원가를 누락하고, 제작 오류로 인해 추가된 예정원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6년부터 '17년 1분기까지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납품이 미루어진 일부 부품 예정원가를 총예정원가에서 누락하고 제작 오류로 인해 증가한 예정원가를 총예정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예정원가를 적절히 산정하지 않아 '16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17년 1분기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은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1 및 38에 따르면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하며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여 반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 후 사건) 문단 3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미비사항 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담당자는 예정원가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지 않았고, 부문장과 재무관리팀도 실행예산의 세부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납기 지연 및 납품항목 증가로 인한 예정원가 증가분을 누락하였다. 또한 회사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검수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제작오류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예정원가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확정·승인하여 총 예정원가를 과소 계상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7,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에서 감사인은 '16년부터 수주산업과 관련하여 핵심감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예정원가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통상적인 수준의 표본만 추출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예정원가 실행예산서의 세부근거 자료와 프로젝트별 실제 진행현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예정원가 작성 및 검증시스템을 갖추어 예정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변경 시 예정원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으로 인해 재무제

표 왜곡표시가 초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감리지적사례 FSS/2008-17 :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 쟁점 분야: 파생상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2015.1.1.~20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5년말 현재 코넥스 상장회사로서,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을 당해부터 실시한 업체이다.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이하 '전환우선주 등')를 발행한 상황이며, 코스닥 상장 시 유통주식수가 부족하다는 상장주간사의 권고에 따라 당시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전환우선주 등 포함)에 대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전입을 통한 1:1 무상증자를 '15년 4월 실시하였다.

회사는 전환우선주 등을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전환권)으로 분리하여 주계약 부분은 유효이자율에 따른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전환권은 외부평가사에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다. 외부전문평가기관(AAA(주), 이하 '평가사')는 평가기준일 시점 발행우선주 1주(전환사채: 액면금액 1만원)에 내재된 전환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때 전환권 평가시 '15년 4월 무상증자 효과를 미반영하여 회사는 전환권 가치를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15기('15.1.1~'1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전환우선주 등의 전환권 가치 산정 시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발행가액 등)의 오류로 인해 전환권 금액이 과소계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동 금액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함에 따라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파생상품부채, 자본잉여금을 각각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1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동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

회사는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최초인식시점 및 그 이후 공정가치로 적절히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사의 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잘못된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A48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해당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 수행한 업무에 원천데이터가 유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완전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가 평가사에 무상증자 내역을 포함한 제반 자료를 제공한 후 무상증자 효과 반영과 관련한 회사-평가사 간 의견교환까지 한 사실관계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사의 전환권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에 무상증자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외부전문기관이 작성한 전환권 등의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발행가액 등)의 오류로 인해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과소·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가사의 평가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야 한다.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20.2분기)

- 금융위원회, 2020. 8

1.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개요

- IFRS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s Committee)는 IFRS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안건결정 (Agenda Decision, 해석서 제정안)을 수행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의 해석기구
 - IFRS 해석위원회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IFRS 적용과 관련한 질의를 받아 기준서 제·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 현행 기준서 내에서 해석 가능할 경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통해 IFRS 적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
 - IFRS 해석위원회는 안건결정 과정 전반과 회의자료를 IFRS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음
 - * (<http://www.ifrs.org/news-and-events/updates/ifric-updates/>)

'20.2분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4건)의 주요내용을 회계업무에 참고토록 공유함으로써 국내 국제 회계기준 적용의 정합성 및 정확성 제고를 기대

【참고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대상】

- IFRS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 채택 요건(Due process handbook 5.16)을 두어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고 널리 퍼진 이슈를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의 대상으로 함
 - ①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 ②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의 제한을 통해 재무보고의 결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 ③ 국제회계기준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범위 안에서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슈



II.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현황

- (현황) IFRS 해석위원회는 ' 20.2분기 중 두 차례(4.29일, 6.16일) 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 해온 4개 안건에 대해 최종결정
 - IFRS 해석위원회는 4개 안건 모두 현행 기준에서 원칙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서 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 안건결정 관련 IFRS해석위원회 절차 】

- ① 접수 → ② Outreach → ③ 1차 회의 → ④ 잠정결정 → ⑤ 의견조회 → ⑥ 2차 회의 → ⑦ 최종결정

' 20.2분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최종)

논의 주제 및 안건결정 요지	관련 기준서
① 자산의 장부금액 회수 시 발생하는 다양한 세효과 (Multiple Tax Consequences of Recovering an Asset)	■ 법인세 (IAS 12)
② 변동리스료가 존재하는 판매후리스 (Sale and Leaseback with Variable Payments)	■ 리스 (IFRS 16)
③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Deferred Tax related to an Investment in a Subsidiary)	■ 법인세 (IAS 12)
④ 축구선수 이적시 지급받는 대가의 회계처리 (Player Transfer Payments)	■ 무형자산 (IAS 38)

III.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주요내용

1

자산의 장부금액 회수 시 발생하는 다양한 세효과

- (질의) 무형자산(라이선스) 장부금액을 회수하며 여러 가지 세금효과 발생 시, 자산의 세무기준액과 적절한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1) 기업은 사업결합을 통해 무형자산(라이선스)을 취득
(장부금액 CU100, 기대잔존가치 0, 사용을 통해 라이선스의 장부금액을 회수)
- (2) 현행 세법은 두가지 과세체계로 구성
 - ① 법인소득세(income tax) : 무형자산(라이선스) 사용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상각비용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음
 - ②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 라이선스 만료 시 CU10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음
- (3) 세법 상 자산의 사용을 통해 창출하는 이익에 자본이득 세금공제를 받는 것은 금지

- (최종결정) 기업은 각 과세체계(법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 하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를 각각 구분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
 - IAS 12의 기본원칙(문단 10) 적용 시, 법인소득세下 자산회수에 따른 세금효과*와 자본이득세下 세금효과**를 구분하여 일시적 차이를 산정하고 이연법인세를 인식
 - * 자산 사용으로 창출되는 과세대상이익과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각비용
 - ** 라이선스 종료 시점에 받을 수 있는 비용공제

무형자산 취득시 일시적차이 구분(질의사례)

- ① 법인소득세 : 가산할 일시적 차이 CU100
 - 법인소득세 하에서 기업은 상각비에 대한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 발생 (회계상 장부금액 CU100, 세무상 장부금액 CU0)
- ② 자본이득세 : 차감할 일시적 차이 CU100
 - 자본이득세 하에서 기업은 라이선스가 만료되는 때, 즉시 공제를 받으므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발생 (회계상 장부금액 CU0, 세무상 장부금액 CU100)

※ 사 례

- ① 취득원가 : 100
- ② 자산의 내용연수 : 2년 / 잔존가치 : 0

법인소득세	<u>X1년 초</u>	<u>X1년 말</u>	<u>X2년 말</u>
회계상 금액	100	50	-
세무상 금액	-	-	-
세무 조정	(100)	(50)	-
일시적 차이	(-)유보 100	(+)유보 50	(+)유보 50
	↑		
	<u>가산할 일시적 차이 100</u>		



자본이득세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회계상 금액	-	-	-
세무상 금액	100	100	-
세무 조정	100	100	-
일시적 차이	(+)유보 100	-	(-)유보 100

↑
차감할 일시적 차이 100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AS 12 문단 10)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 세효과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미래의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감소)시킨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자산)를 인식한다.

2

변동리스료가 존재하는 판매후리스

□ (질의) 판매후리스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 금액 측정과 자산 판매 손익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1)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은 유형자산을 다른 기업(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하고, 동 유형자산을 5년 동안 다시 임대하는 판매후리스 계약을 체결
- (2) 유형자산의 이전은 기준서 IFRS 1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유형자산 판매로 회계처리하고, 이전 대가는 거래일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
- (3) 리스료는 모두 변동리스료로 구성되어 있고, 변동리스료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5년)동안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연동되며,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에 해당하지 않음

※ 사례

- ① 기존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형자산 장부금액 : CU 1,000,000
- ② 구매자-리스제공자가 지급한 이전대가 : CU 1,800,000(=유형자산의 공정가치)
- ③ 리스료는 모두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 ④ 자산 판매일에 예상되는 리스료의 현재가치 : CU 450,000

1. 소유권 비율 = $\frac{CU450,000}{CU1,800,000} = 25\%$			
2. 사용권 자산금액 : 유형자산 장부금액(CU 1,000,000) × 소유권 비율(25%) = CU 250,000			
3. 인식할 매각손익 : (CU 1,800,000 - CU 1,000,000) × (1-25%) = CU 600,000			
4. 회계처리			
(차) 현금	CU 1,800,000	(대) 유형자산	CU 1,000,000
(차) 사용권자산	CU 250,000	(대) 부채	CU 450,000
		(대) 매각손익	CU 600,000

- (최종결정) 판매후리스의 경우, 지급리스료가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에 해당하더라도 부채에 포함하여 사용권 자산을 측정하고 매각 손익을 인식(IFRS 16 문단 100(1))
 - 일반적인 리스는 문단 27(2)와 BC 169를 적용하여 부채 측정 시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제외하고 있으나
 - 이를 상기 판매후리스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 소유권 비율 0%, 부채금액 CU 0, 사용권 자산 CU 0, 처분손익 100%가 인식되어 문단 100(1)과 상충
 - 판매후리스에 적용되는 문단 100(1)에서는 부채 측정 관련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판매후리스 거래 부채 측정 시 기초자산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기로 결정
 - 사용권자산과 매각 손익을 먼저 인식한 후에 부채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분개상 잔여금액)

<p>◆ 판매후리스 회계처리 시, 판매자는 매각한 유형자산 장부금액 중 리스를 통해 계속 보유하는 비율(소유권 비율*)을 산정하고,</p> <p style="margin-left: 20px;">* 소유권 비율 = $\frac{\text{예상리스료의 현재가치(부채)}}{\text{거래일유형자산의 공정가치}}$</p> <p>○ 장부금액 중 소유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권자산으로 측정한 후, 이전대가와 장부금액 차액 중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 손익으로 인식</p>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IFRS 16 문단 100)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 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
- ◇ (IFRS 16 문단 BC 266) IASB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완료된 판매에 대하여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차손익은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거래의 판매요소(기초자산의 판매)에 IFRS 15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법적 관점에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흔히 전체 기초자산을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리스백의 지속 기간에 대한 자산 사용권을 계속 가지므로 리스백 종료시점의 기초자산 가치의 지분만을 판매한 것이다.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자산을 구매한 시점에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이미 획득했었다. 그 사용권은 예를 들면 유형자산을 매입할 때 획득한 권리의 일부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IASB의 견해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된 권리에 관련되는 차익을 인식하는 것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 ◇ (IFRS 16 문단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 (2)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 ◇ (IFRS 16 문단 BC169) IASB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서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IASB 위원은 원가-효익만을 이유로 그렇게 결정하였다. 그 위원들의 견해는 모든 변동리스료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설득되었다. 특히 일부 리스이용자가 수많은 리스를 보유하고 있고,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면 측정의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른 IASB 위원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그 성과가 생기거나 사용될 때까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지급액은 리스이용자가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개시일에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그 자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3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 (질의) 종속기업이 이익 배당 시에만 과세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지 여부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1)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으로 인하여 기업(질의자)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발생
- (2) 기업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종속기업이 이익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IAS 12 문단 39의 종속기업 투자와 관련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3) 질의자(지배기업)와 종속기업이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음
 - ① 이익 배당 시에만 20% 세율(배당세율)로 과세되며, 미배당 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율은 0% (유보세율)
 - ② 이익 배당과 관련해 종속기업에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기업(지배기업)에 중복과세하지 않음

□ (최종결정)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며, 이익 배당 시 부과되는 세율(20%)에 따라 측정

- 종속기업의 미배당 이익으로 인한 일시적 차이는 부채 인식 면제 요건을 미충족하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IAS 12 문단 39)
- 이익 배당으로 종속기업 투자자산 장부금액 회수가 예상되므로 관련 세효과를 반영해 배당 세율(20%)에 따라 측정(IAS 12 문단 51)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IAS 12 문단 39)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 (1) 지배기업, 투자자,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 (2)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 (IAS 12 문단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4

축구선수 이적시 지급받은 대가의 회계처리



- (질의) 축구클럽에서 선수를 다른 클럽에 이적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동 이적료를 별도 수익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무형자산(등록권)을 제거하고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할지 여부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1) ① 축구구단(회사)은 다른 구단(이전받은 구단)에 선수를 이적시킴
 - ② 선수 영입 시 구단은 전자 이적 시스템에 선수를 등록하며, 등록시점부터 고용계약이 성립하고, 선수는 상호 동의 없이는 구단에서 나갈 수 없음
 - ③ 고용계약과 전자 이적 시스템 등록을 함께 '등록권'이라고 함
- (2) ① 구단은 등록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 ② 구단은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선수를 육성한 후 다른 클럽으로 이적시킴
- (3) ① 구단은 선수를 이적시키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적료를 수령
 - ② 전자 이적 시스템 등록은 이전받은 구단으로 이관되지 않으며, 이전받은 구단이 선수를 등록(새로운 권리 취득)하는 시점에 법적으로 소멸
- (4) 구단은 이전받은 구단이 전자 이적 시스템에 선수를 등록할 때 무형자산 제거

- (최종결정) 회사는 무형자산(등록권)의 장부금액과 순매각 금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
 -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문단*(IAS 16 문단 68A)을 준용하여 무형자산(등록권) 처분을 IFRS 15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검토
 - * 임대목적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대체하고 판매금액을 IFRS 15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
 - 해당 문단은 유형자산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며, 무형자산 처분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IAS 38 문단 113) 해당 문단을 준용할 수 없다고 결론
 - 기업은 등록권을 IAS 38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등록권 제거와 관련해서는 IAS 38의 제거규정 적용이 타당
 - 무형자산 처분의 경우 IAS 38 문단 113에서 수익이 아닌 차익으로 인식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

- 현금흐름 표시와 관련해서는, IAS 7에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사례로 무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투자활동으로 공시(IAS 7 문단 16)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 ◇ (IAS 38 문단 113) 무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산정한다. 그 이익이나 손실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 (IAS 16 문단 68A) 그러나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 (IAS 7 문단 16)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2)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상법 · 공정거래법 · 금융그룹감독법 제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8

1 추진배경 및 경과

- 공정경제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現 정부는 이를 구축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특히,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은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와 함께 공정경제 정책의 근간이다.
 - 그간 하위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공고한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 *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18.7.2.),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21.) 등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①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 ②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합리화,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 근절, 혁신성장 뒷받침 등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 ③ 우리 경제에서 그 비중과 영향이 크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
- 그간 정부는 이러한 입법과제들을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며,
 -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6월~7월), 규제심사(7월), 법제처심사(8월) 및 차관회의(8.20.)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 * 정부입법(공정거래법) 및 의원입법(상법, 금융그룹감독법)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입법으로 제개정하여 21대 정기국회 개원전에 국회 제출 추진

2 주요내용

1 상법 일부개정안

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현행 상법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및 모회사의 주주에게 피해가 있음에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
 - *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없음
- 이에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 비상장회사 주주: 총발행 주식의 1%, 상장회사 주주: 총발행 주식의 0.01%+6개월 이상 보유

②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 적용대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 또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한다.

③ 불합리·불명확한 법령 정비

- ①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출석 주주의결권의 과반수' 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한다.
 - * 현행 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상법 제368조 제1항)
- ② 또한, 사실상 직전영업연도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상법 제350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동등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 편의를 도모하고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가 가능하도록 한다.
- ③ 그간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하여,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예시] 주주제안권

* 비상장회사: 주식 3% 이상 보유

** 상장회사: 주식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경우 0.5%) 이상 보유 + 6개월 이상 보유

→ 3%를 보유하더라도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제안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 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 有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

① (전속고발제)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② (형벌정비) 그간 형벌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한다.

③ (사인의 금지청구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④ (자료제출 명령제)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

⑤ (과징금 상향) 범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

*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②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

①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 지분을 조정, 비상장회사 또는 자회사의 설립 등으로 규제를 우회하면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회사를 통해 더 높은 비중으로 내부거래가 이루어짐
('18년 내부거래 비중) 규제대상 회사(11.2%, 9.2조원) < 비규제대상 회사(12.4%, 27.5조원)

② (지주회사)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상장 20%→30%, 비상장 40%→50%)

*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금액 대비 평균 55%에 이르

- 고, 배당의 수익(브랜드수수료, 용역수수료, 임대료 등)도 과도하게 수취('18년 공정위 실태조사)
- ③ (공익법인)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 *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 주식을 집중 보유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18년 공정위 실태조사)

③ 혁신경쟁 촉진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범위반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실효적으로 해소

- ① (벤처지주회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한도 내 허용) 폐지 등
- ② (기업결합)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 ③ (정보교환)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보완한다.

④ 기타

-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등 법 집행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3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를 권고

※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운영 중

①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

- (금융그룹의 지정) ①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②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 *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의 업종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인 경우
- ** 현재 모범규준에 따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
- 이들 6개 금융그룹 금융자산은 총 약 900조원, 전체금융회사의 18% 수준('18년말 기준)



- (대표금융회사 선정)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한다.
- * 다만, 대표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

② 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구축

-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한다.

③ 건전성 관리

- (자본적정성)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한다.
 - 금융그룹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금융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한다.

④ 보고·공시

- 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한다.

⑤ 건전경영지도

-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한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들 3법 제개정안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들로서,
 - 향후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8월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② (생략)

●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

-----, ----- 제403조 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

② (현행과 같음)

●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제408조의9 【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 제409조 【선임】 ① (생략)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제415조 【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③ (생략)

●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 ⑤ (생략)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생략)

● 제408조의9 【준용규정】 --- 대해서는 -----
 -----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 제409조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415조 【준용규정】 -----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

●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
 ----- <후단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p>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u><신설></u></p> <p style="padding-left: 40px;"><u><신설></u></p>	<p>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p> <p>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21일(금)	8월 24일(월)	8월 25일(화)	8월 26일(수)	8월 27일(목)
미 달 러 (USD)	1186.30	1185.30	1190.00	1186.30	1187.00
일 본 엔 (JPY)	1121.90	1119.42	1122.96	1115.21	1120.87
영 국 파 운 드 (GBP)	1568.23	1552.51	1555.15	1559.93	1568.98
캐 나 다 달 러 (CAD)	900.18	899.80	900.42	900.79	903.18
홍 콩 달 러 (HKD)	153.07	152.94	153.55	153.06	153.15
위 안 화 (CNH)	171.55	171.75	172.09	171.75	172.04
유 로 화 (EUR)	1407.84	1398.77	1403.31	1403.81	1405.11
호 주 달 러 (AUD)	853.84	849.50	852.58	853.48	859.57
싱 가 폴 달 러 (SGD)	868.00	863.95	868.45	866.96	869.37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4.31	283.56	285.00	284.59	284.75